

## ② 주민등록제도

### I. 주민등록제도 연혁

#### 1. 주민등록제도 변천

##### 가. 주민등록법 제정 이전

- 조선기류령 및 기류수속규칙(1942. 9. 26. 제령 제32호) 제정
  - 본적지 외에서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는 부·읍·면에 비치된 기류부에 등재하도록 함
- 기류법 제정 (1962. 1. 15, 법률 967호)
  - 본적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신고대상이었고 주민등록의 이중등록이 가능하였으며, 신고는 임의사항이었음
  - 업무관장 : 시장·군수 (감독권 : 법원)

##### 나. 주민등록법 연혁

- 1962. 5 10 법률제1067호로 주민등록법은 기류법에 대체하여 제정된 이후 14차 개정('06. 3. 24)을 통하여 현재에 이룸
    - 주민등록지를 공법상 주소로 한 것은 주민등록법 제1차개정('68.5.29)시 부터임
- ⇒ 주민등록법 연혁(별표 1 참조)

## 2. 기류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비교

구분	기 류 제 도		주민등록제도(주민등록법)
	조 선 기 류 령	기 류 법	
1.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2. 9.26制令 제32호 제정</li> <li>· '42. 9.26기류수속규칙</li> <li>· 조선총독부령 제235호 제정</li> <li>· 1942.10.15시행</li> <li>· *이때부터 호적제도와 기류제도 병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1.15법률 제967호 제정 시행</li> <li>· *기류 : 본적지가 아닌 일정한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일</li> <li>· * 실제주소지와 기류지가 다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 5.10법률 제 1067호 제정</li> <li>· '62. 6.25시행일(기류법 폐지)</li> <li>· * 신분증명서 : 시·도민증</li> <li>· '68.5.29법률 제 2016호 1차 개정, '68.8.29 시행</li> <li>· '68.9.30 내무부령 제32호 제정</li> <li>· '68.10.20 주민등록표작성일</li> <li>·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li> </ul>
2.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의 전시인력동원 자원확보수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에 거주하는 상시인구의 증감태에 파악</li> <li>·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인구동태를 명확히 파악</li> <li>· 주민생활의 편의증진 및 행정의 적절한 처리</li> </ul>
3.등록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외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좌동)</li> <li>· 외국인도 신고대상</li> <li>· 이중등록가능(주소지외 기류지를 따로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li> <li>· 외국인, 해외이주자 제외</li> <li>· 이중등록불가(주민의 거주와 일치)</li> </ul>
4.관장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府尹(경성부에 있어서는 區長) 또는 읍·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의 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출장소장)</li> </ul>
5.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류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류부</li> <li>· * 공부보관 - 기류부 : 1년, 주거표 : 10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적부:'55.4.18~'62.6.24</li> <li>- 구주민등록표: '62.6.25~ '68.10.19</li> <li>- 재작성주민등록표: '68.10.20~'79.6.30</li> <li>- 현주민등록표:'79.7.1~</li> <li>· * 본적지의 주거표 '68.8.29~81.9.30(폐지)</li> </ul>

## Ⅱ. 주민등록 일반

### 1. 의의 및 목적

#### 가. 의 의

주민등록제도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관할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가족관계기록 : 국민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본적지에서 기록·관리하는 제도  
주민등록 : 주민의 거주이동 실태를 거주지에서 기록·관리하는 제도

#### < 참고사항 >

- 주민등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법령·제도 등 : 총 1,196개  
(법률232, 시행령523, 시행규칙441)

[근거 : 2008.11.23 현재, 법제처법령검색사이트에서 검색]

#### 나. 목 적

- 주민의 거주이동 실태파악 ⇒ 주민관리, 사회안정, 질서유지
-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 주민복지증진, 생활편리성 제고
  - 주민등록증발급 신분확인, 등·초본 발급으로 거주관계의 공적증명, 학령아동입학지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복지지원 등
-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선거인 확정지원, 세제운영, 여권발급 등 행정근간자료로 활용

## 2. 용어 정의

### 가. 세 대

- 세대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두고 있지 않으나 현행 주민등록제도에서는 세대단위로 주민등록표를 작성하고 세대주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세대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을 의미하고, 또한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타인(동거인 등)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음

### 나. 세 대 주

- 세대를 대표하는 자로서, 신고된 자를 세대주로 기재함.
  - ※ 성년을 제외하고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하는 것은 부당함.
- 주민등록신고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주민등록신고의무자를 세대주로 하고 있으며 별도로 법률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님

### 다. 세 대 원

-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를 세대원이라 함. (동거인 포함)
- 세대원이라 하여 각각의 실제적인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라. 세대를 관리하는 자

- 세대원중에서 사실상 세대주 역할 또는 세대주 부재시에 세대주 역할을 하는 자

- 세대원중에서 사실상 세대주 역할을 하는 자로서는,
  - 세대주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 세대주 부재시 세대주 역할을 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그 숙소의 관리자 등 임
- ※ 동거인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는 동거인란에 기재하며 이때 관련공부(가족관계증명서 등)상 근거 없는 사실혼 등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처 등으로 표기 불가
- 「민법」 제779조의 가족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주거표” 란>

주민등록법 1차개정('68.5.29)시 내용으로서 주민등록과 호적의 관리기관이 다른 사람의 주거표를 본적지의 시·읍·면에 작성·비치해 두고 주민등록 사항을 계속 기록케 함으로써 이주동태를 명확히 하는 한편 주민등록의 2중등재나 허위등록을 막는데 중요한 기초자료였으며, 호적과 주민등록이 동일한 자는 주거표를 작성치 않음(현재 폐기)

[근거 : 주민등록사무편람, '68년 내무부 발간]

### 3. 주민등록 대상자와 등록장소

#### 가. 등록대상자와 장소 (법 제6조)

주민등록대상자		주민등록장소	관계법령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 등록기준지 불명자 포함) 단, 거주할 목적이 없는 자는 제외(예: 업무출장등)		30일 이상 거주하게 될 읍·면·동 (출장소)	법 제6조	
군 인	영내 세대 기거 군인	세대에 속하는 군인	그 세대 관할 주민등록지 읍·면·동	법 제6조②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는 군인	등록기준지 관할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영 제4조
	영외 거주 군인		영외 거주지 읍·면·동	법 제6조
해 외 이 주 자	영주권을 포기한 자	거주지 관할 읍·면·동(여권법에 의한 여권무효확인서 첨부)	영 제5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중 현지이주 예외자로 통보된 자(외교통상부장관)	거주지 읍·면·동	법 제6조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 조의5	
	이중국적자중 국민처우신청자 (출입국관리소)	거주지 읍·면·동	이중국적자업무 처리지침(법무부)	

#### 나. 2중등록의 금지(법 제10조②)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1개소에만 주민등록을 하여야 함

#### 다.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6조, 영 제5조)

-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
  - ※ 현지이주예외자로 통보된자는 예외(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3항)
- 외국인
  -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으로 같음(출입국관리법 제31조, 법무부)
- 이중국적자
  - ※ 법무부의 이중국적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민처우신청(여권신청)을 한 이중국적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가능

## 4. 주민등록사무의 관장

### 가. 주민등록사무관장 기관별 임무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본적지 시·구·읍·면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관장 ②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③ 서손 및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④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경비 부담 ⑤ 시·군·구단위이하의 전산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시·도에서 재위임된 경우) ⑥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⑦ 주민등록담당자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	① 각종 신고서 접수 처리 ② 주민등록표 작성관리 및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③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세대명부, 전입, 전출자 명부) 비치관리 ④ 주민등록증 발급 ⑤ 서손 및 회수주민등록증 보관, 인계 ⑥ 가족관계등록사항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정리 및 등록기준지 통보 ⑦ 주민등록번호 부여 ⑧ 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지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⑨ 주민등록 전산 입·출력 및 자료관리 ⑩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①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의 통보(조회)사항에 대한 확인 및 회보 ② 가족관계등록사항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을 주민등록지에 통보 ③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 번호 기재

### 나. 주민등록사무의 관장자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법 제2조)

당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

### 다. 주민등록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법 제3조)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은 권한의 일부(지도·감독권 등)를 시·도지사에게 위임(동법시행령 제2조)

## 5. 주민등록의 신고

### 가.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법 제8조)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하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도 인정함

### 나. 신고사항 및 기간

신고 사항	서 식 번 호	신 고 기 간	관계법령
① 주민등록신고	영 제 10호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법 제10, 11조 영 제14, 15조
② 정정신고	영 제 9 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법 제 13 조 영 제 20 조
③ 말소신고	영 제 9 호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법 제 8 조 영 제 13 조
④ 전입신고	영 제 15호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법 제 16 조 영 제 23 조
⑤ 국외이주신고	영 제 15호	이민을 위한 여권발급 신청전	법 제 19 조 영 제 26 조
⑥ 재등록신고	영 제 15호	재등록시	영 제 32 조
⑦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영 제 30호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영 제 36 조
⑧ 주민등록증 재 발급신청	영 제 32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법 제27조 영 제40조

### 다. 신고의무자(법 제11조)

#### 1) 일반신고

○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임

-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관리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신고

- 다만, 본인이 신고하는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의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 2) 재등록 신고

- 말소자 본인, 다만 말소세대를 재등록할 경우에는 말소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임(영 제32조)

## 3) 참고사항

- 전입신고시에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거주지의 세대주가 다를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전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영 제27조②)

## 라. 신고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다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철회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영 제42조)

## 마. 신고 방법(법 제18조)

### 1) 서면신고

- 신고의무자가 소정의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2) 구술신고

- 구술로 신고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소정의 신고서에 그가 말한 사항을 기재한 후
-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함

※ 서면(또는 구술)신고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확인

#### 바. 신고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영 제16조)

- 주민등록신고,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또는 재등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상의 구비요건 및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검토하고
- 신고접수부에 등재한 후 접수증에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함

#### 사. 관계기관 통보

- 주민등록지에서 등록기준지에 통보 : 주민등록번호부여(정정)사항
- 등록기준지에서 주민등록지에 통보 : 출생·사망(실종),(등록기준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변경사항

## 6. 주민등록번호

### 가. 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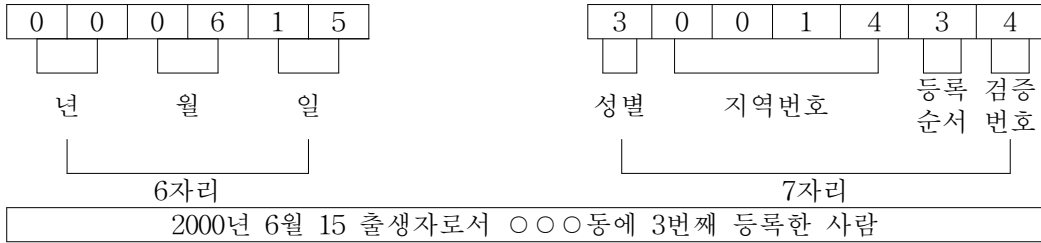
등록기준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여 주민의 자기 식별을 통한 생활편의 제고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함

※ 1인에게 1번호만 부여, 이미 사용한 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나. 번호의 구성

#### 1) 번호의 자릿수 및 연결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 1968. 8월 ~ 1975. 8월까지의 12자리 부여사용 : 지역번호+성별·개인번호

## 2) 성별표기

- 1800년대 출생자 : 남자 9, 여자 0
- 1900년대 출생자 : 남자 1, 여자 2
- 2000년대 출생자 : 남자 3, 여자 4

## 다. 번호부여대장 관리

-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은 열람을 일체 금지하며 위·변조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자가 번호부여기관단위로 9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지역번호를 추가요청,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여받은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함.

## 라. 번호정정시 조치사항

- 번호부여 착오인 경우에는 번호부여지 읍·면·동에서 정정하고, 이기 착오인 경우에는 현주소지에서 정정하고 등록기준지에 통보.
-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으로부터 관련공부 등의 목록을 접수받아 관련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정정 협조문서를 발송함.
  - 주민등록번호 정정과 관련된 예금 통장, 건강보험카드, 신용카드, 졸업학교 등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재발급된 증 뒷면에 번호 정정사항을 추가 기재함

## 7. 주민등록 관계서류 작성·기재 방법

### 가. 주민등록표 작성 : 05. 8. 1부터 수기폐지 됨에 따라 전산작성

#### 1) 종류(법 제7조제2항)

- 개인별 주민등록표 : 개인에 관한 신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
- 세대별 주민등록표 : 세대에 관한 신고사항을 통합적으로 기록

#### 2) 주민등록번호 부여(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

- 본적확인 후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함

### 나. 작성방법

#### 1) 표기문자(영 제9조)

-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표기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표기 가능
- ※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의 표기문자로 기재함

#### 2) 정리방법(영 제9조)

- 정정·삭제·삽입한 때에는 그 사유, 연월일,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명기하고, 정정·삭제되는 문자 자체는 남겨 놓아 읽을 수 있어야 함
- 주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순으로 표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표기

3) 주민등록사항의 확인(법 제15조, 영 제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등록기준지에 통보하고,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통보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정리함

4) 사용잉크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흑색 또는 청남색 잉크로 기재함
- 다음사항은 흑색으로 기재함.
  - 주민등록증

## 8. 정 정

### 가. 정정사유

-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법 제13조)
-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신고착오, 행정기관 착오)

### 나. 정정절차

- 주민신고에 의한 정정 : 정정(말소)신고서(영 제9호서식)
- 가족관계등록사항신고(가족관계등록사항)에 의한 정정 :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영 제11호서식)

- 직권조치에 의한 정정 : 사실조사서(영 제19호서식)
- 이의신청 등에 의한 정정 : 이의신청서(영 제25호서식)

### [ 주민신고에 의한 정정중 지번에 관한 정정 방법 ]

- 지번정정은 지적공부가 정정되거나 착오로 기재하여 주민등록표와 실제지번이 다를 경우, 주민의 정정신고서에 의해서 정정함
  - 정정신고사항을 지적관계공부 및 사실확인서류와 대조한 후 주민등록표를 정리함
    - 지적공부에 의한 정정 : 지번분할, 지번합병, 지번경정, 등록전환 등이 있고 주민등록표의 정리사유는 지적공부의 정리사유를 그대로 기재함 (“1994. . . 지번분할”)
    - 전입신고시 기재착오 : 관계입증서류와 해당 통·리장의 인우보증에 의해 정리함 (“1994. . . 실제지번정정”)
- ※ 지번정정은 현거주지에서만 가능(단, 공무원의 명백한 착오 등인 경우 예외)

## 9. 말 소

### 가. 말소의 종류

① 신고에 의한 말소	② 직권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말소(가출 등)</li> <li>○ 가족관계등록사항신고에 의한 말소(사망, 실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신고자 직권말소</li> <li>○ 무단전출자 직권말소</li> <li>○ 2중 등록자 말소</li> <li>○ 이민출국자 명단통보서 접수에 따른 말소</li> <li>○ 현지이민자 명단통보서 접수에 따른 말소</li> <li>○ 국적이탈로 인한 말소</li> </ul>

③ 이의신청에 의한 말소

나. 신고에 의한 말소

1) 주민등록말소신고(영 제9호서식)에 의한 정리

- 세대원중 일부가 가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사항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대주가 말소신고 함.
- 세대주가 무단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사항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남은 세대원중 그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말소신고 함.
- ※ 담당공무원은 사실조사에 의하여 말소 처리함. 이때 최고·공고는 생략함.

2) 가족관계등록사항신고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가) 주민등록지에서 사망 또는 실종신고 접수시

사망 또는 실종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인의 주민등록표를 말소 정리함.

이 경우 사망 또는 실종된 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정정신고서(세대주변경)를 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재작성(사유: “세대주 사망”, “세대주 실종”)함.

## 나) 등록기준지에서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 접수시

사망 또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영 제11호서식)을 주민등록지에 통보함.

※ 주민등록지에서는 사망 또는 실종된 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 기재순에 의거 세대주를 선정하여 세대별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함.

## 다. 직권말소

### 1) 허위신고자 직권말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 경우에는 통·리장의 사후 확인결과와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서에 의거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때에는 고발조치(편람 제15호서식)함.

### 2) 무단전출 직권말소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사실조사서에 의거 조사한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한 후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함.

### 3) 사망자 직권말소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 신고전이라도 실제 사망이 확인되면 읍·면·동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직권 조치함.

### 4) 이중등록자 말소

○ 주민등록이 이중등록 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주민에게 이중등록사실을 통보하고 주민등록을 정리하도록 최고한 후, 최고 기간내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함.

※ 허위신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조치함.

**<이중등록자 주민등록표 정리요령>**

- ① 2개기관에 거주자로 등록된 경우 ⇒ 실제 거주지 읍·면·동이 우선
  - 가. 주민등록 이중신고자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읍·면·동에서는 말소절차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말소한 다음
    - 말소대장에 말소사유, 현거주지, 정리일자를 기록
  - 나. 실제는 전출하였으나 공부미정리로 이중등록
    - 전출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를 전출정리하여 거주지 읍·면·동으로 전송
- ② 2개기관에 각각 거주자 또는 말소자로 등록된 경우 ⇒ 거주지 읍·면·동이 우선
- ③ 2개기관에 말소자로 등록된 경우 ⇒ 최근 말소지 읍·면·동이 우선

5) 국외이주신고에 의한 말소

- 국외이주신고시에는 주민등록표를 말소할 수 없으며,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한 후 이민출국자명단을 통보받은 때에 말소처리 하여야 함.

예) 1994. 6. 2 국외이주신고, 1994.10.30 이민출국, 1994.12.27일 이민 출국자통보서가 접수되었다면 말소일자는 1994.12.27일임.

※ 주민등록표에는 국외이주지와 출국일자, 이민출국자통보서 접수일자를 각각 입력 후 “이민출국말소”라고 기록하고, 관계공무원 성명 명기

※ 명단통보: 법무부출입국관리소→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읍·면·동

6) 현지이주자 명단통보서 접수에 따른 말소

가) 일시적인 여행·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갔다가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나)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외국의 거주여권 취득자 명단을 영 제18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다시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면

다) 읍·면·동장은 주민등록표에 이주국, 현지이주일자와 현지이주자통보서 접수일자를 각각 입력하고 “현지이주말소”라고 기록한 후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명기함

※ 현지이주일자는 최초 거주여권발급일자 또는 영주권 취득일자이며, 말소  
일자는 현지이주자통보서 접수일자임.

7) 국적상실로 인한 말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신고(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직권으로 말소함.

8) 국적이탈로 인한 말소

등록기준지에서 국적이탈사항을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아 정리한 때에는  
주민등록지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주민등록지에서는 주민  
등록표를 말소함.

- 이미 말소된 주민등록표는 국적이탈사항을 추가로 기록함.

9) 이의신청에 의한 말소

직권조치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주민의 이의신청으로 주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 이때 사유는 “이의신청정정” 으로 정리함.

**라. 업무처리요령**

1) 주민등록말소대장

주민등록말소대장(편람 제18호서식)을 비치·활용함.

※ 전산처리시는 말소자명부를 출력하여 활용함.

2) 주민등록증 회수 및 처리

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접수시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함.

나) 국외이주신고자의 주민등록증은 별도 보관하였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민출국자명단이 통보되면 주민등록증회수(인계)대장에 등재함.

다) 회수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회수(인계)대장(영 제36호서식)에 등재하고 매분기별로 시·군·구에 인계하여 소각 또는 파쇄함.

## 10. 재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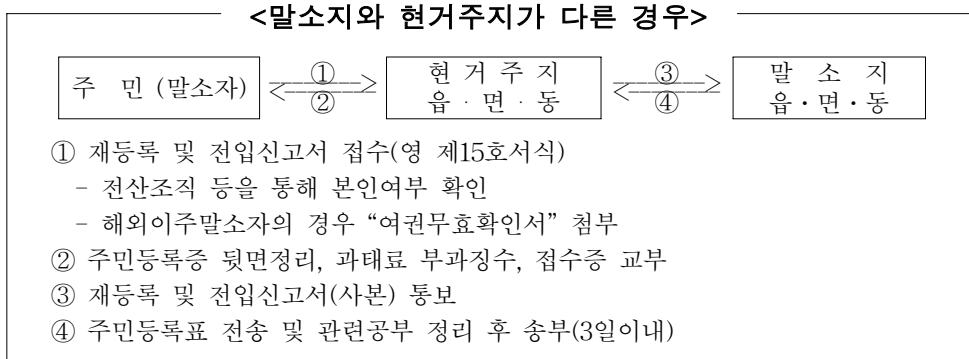
### 가. 재등록 대상

- 주민등록되었던 자가 다음사유로 말소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임
  - 1) 직권으로 말소되었던 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 2) 세대주신고로 말소되었던 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 3) 해외이주로 말소되었던 자가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 재등록하는 경우
  - 4) 해외이주자로 말소되었으나 해외이주예외자로 통보된 경우

### 나. 재등록 장소

- 말소지가 현거주지인 경우에는 말소지에 재등록신고 함
- 말소지와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현거주지에 재등록 신고함

### 다. 업무처리요령



라.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직권재등록(정정)

1) 직권재등록대상

-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소하였거나 국외이주목적이 아닌 국외출장 및 유학, 직장근무 등으로 해외에 일시 거주한 사실을 모르고 말소한 경우, 거주지에서 주민등록표를 직권재등록 처리한다.

※ 불법으로 인한 경우 등 당연 무효인 경우는 기록을 삭제할 수 있음

## 11.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가. 사실조사의 종류(법 제20조)

1) 수시조사

전입신고 사후확인시, 건물소유주에 의해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정기조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실조사 실시

나. 사실조사요령

- 조사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조사이유, 조사일시, 조사방법, 전입이후 거주상태 등을 자세히 기재함(영 제19호서식)
- 사실조사는 직권조치의 기본적 근거이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함
  - 참고인(진술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참고인(진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 전입신고서상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통화결과(결번여부, 통화자, 통화일시, 통화내용 등)를 기재하는 등 구체적으로 작성함

#### 다. 최고(공고)

- 사실조사 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민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최고서가 반송되는 등 의사(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함.
- ※ 최고시 최고방침 결정일과 최고장 송달일을 제외하고 신고기간 설정
- ※ 최고, 공고를 동시에 하여서는 아니되며, 최고장이 반송되면 공고

#### 라. 직권조치

- 신고의무 불이행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최고, 공고)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등록·정정·말소함
- ※ 직권조치(주민등록표에 말소처리) 전에 전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관할권이 바뀌게 되므로 직권조치할 수 없음
- ※ 직권조치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

#### < 직권조치시 유의사항 >

- 일시(특정기한은 없음) 해외출국한 자는 직권조치할 수 없으나, 사실조사결과 출국전 주소지에 허위로 전입신고한 경우 등은 직권조치할 수 있음  
⇒ 착오 말소한 경우 추후 출입국증명서등을 근거로 직권정정
-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조치를 하지 않음..
- 이미 장기출타 신고한 자를 말소신청시 허위신고 또는 장기출타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할 수 있다.
- ※ 장기출타 신고제는 '06. 3. 1부터 폐지

## 12. 이의신청(법 제21조)

가. 이의신청기관 : 해당 처분청(읍·면·동장)

나. 신청기간 :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다. 신청방법 : 서면

라. 심사결정 및 통지 : 처분청은 10일 이내 심사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

※ 통지서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 통지함

### Ⅲ. 거주지 이동

#### 1. 거주지이동 신고 및 주소정리 기준

##### 가. 전입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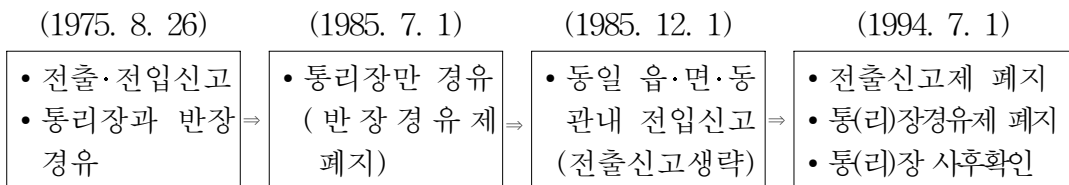
-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
  - 신고의무자 : 세대주. 단,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는 세대관리자 또는 본인
- 전입신고시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거주지의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는 전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나. 주소정리 기준일자

시 행 시 기	전 출 일 자	전 입 일 자	비 고
1981.1.31 ~ 1994.6.30	전출신고일자	전출신고 익일	
1994.7. 1 ~	전입신고일 전일	전입신고일	

※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법 제23조)

<전입신고절차 변천과정>



## 2. 전입신고서 접수

### 가. 전입신고서 확인사항

- 세대일부만 전입하는 경우
  - 전거주지의 신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확인
- 세대원 일부만 전입하여 신거주지의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
  - 전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의 서명날인 확인
- 전거주지의 관할 행정기관명의 정확한 기록여부 확인
- 기타 관련 신고사항란 확인

### 나. 전입신고 접수증 교부

- 전입신고서(영 제15조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접수증에 읍·면·동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접수증을 교부함
- 초등학교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접수증에 취학학교명을 기재함

### 다. 전입자의 주민등록증 뒷면에 주소변동사항 정리

- 영내군인, 해외유학, 장기출타자는 복귀시 정리

## 3. 관련공부 이송요구

가. 전입신고서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전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공부 이송요구

나. 관련 공부는 등기우편 또는 문서사송(관내)에 의함.

#### 4. 전입신고사항 사후확인

- 읍·면·동장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출력하여 관할 통·리장에게 송부하고,
- 통·리장은 15일 이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짓신고가 명백한 경우 고발조치

#### 5. 주민등록표 및 관련공부정리

- 관련 공부가 도착되면 각 업무담당자는 전입신고서와 대조 확인하여 정리, 신고서의 신고처리사항란에 각 업무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
- 확인 결과 이상이 있거나 의심이 갈 경우에는 전거주지에 확인하고 관할경찰관서에 수사의뢰

#### <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

가.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전입신고서(영 제15호서식)의 '전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미성년자의 확인은 불가하므로 전세대주의 확인 또는 본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친권자 여부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부 또는 모 모두 가능

나. 미성년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거주사실 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음

## IV. 국외이주자 관리

국외이주자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민출국자와 현지이주자가 있음

- 이민출국자 : 국내에서 읍·면·동장에게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외교통상부로부터 거주여권을 발급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출국하는 자.
- 현지이주자 : 국외이주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외교통상부(재외공관장 등)로부터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

☞ 영주권 :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부여하는 권리  
(예 : 미국의 ‘그린카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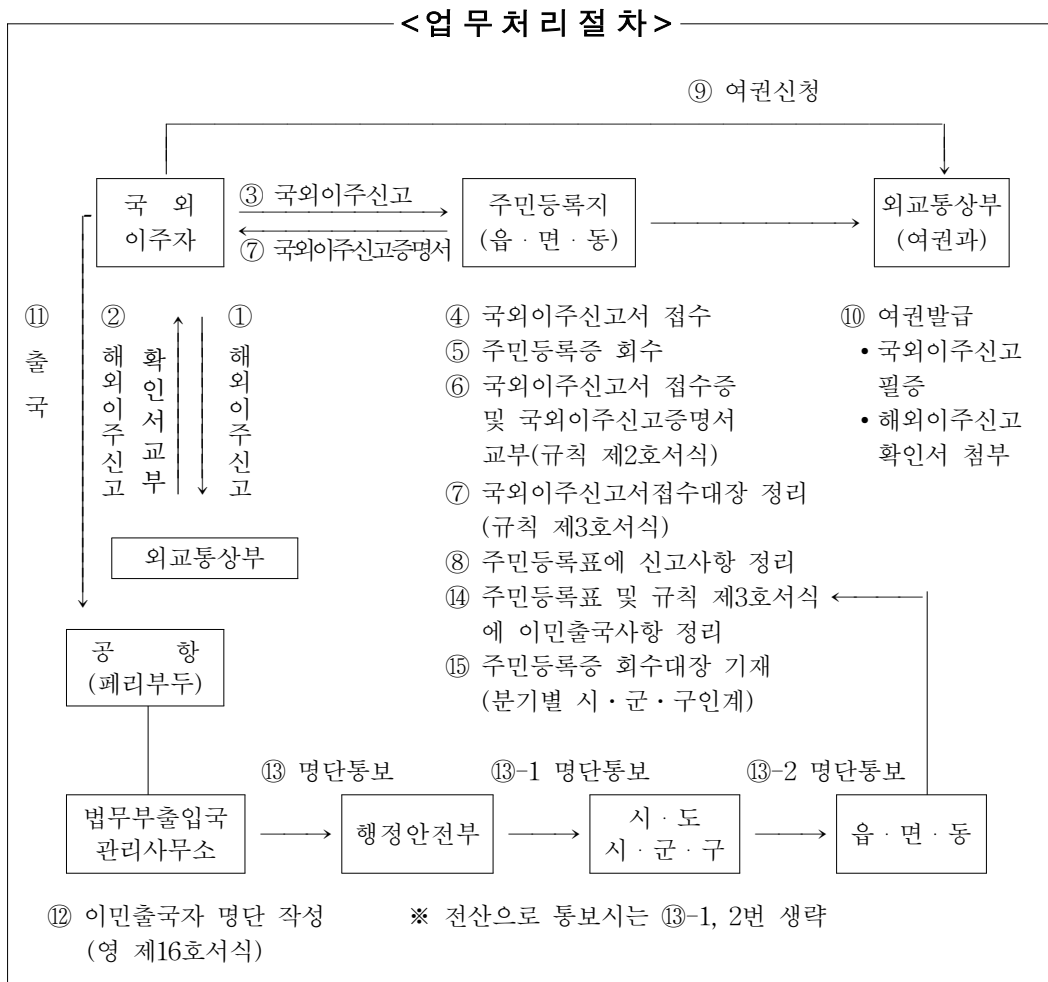
### 1. 이민출국자

가. 국외이주신고서 접수

- 국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음.
- 국외이주신고서(영 제15호서식)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함.

나. 국외이주 신고필증 교부

- 국외이주신고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국외이주신고증명서(규칙 제2호서식)을 교부함.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교부시에는 동 증명서를 여권발급신청시에 외교통상부에 제출하도록 안내함.



## 2. 현지이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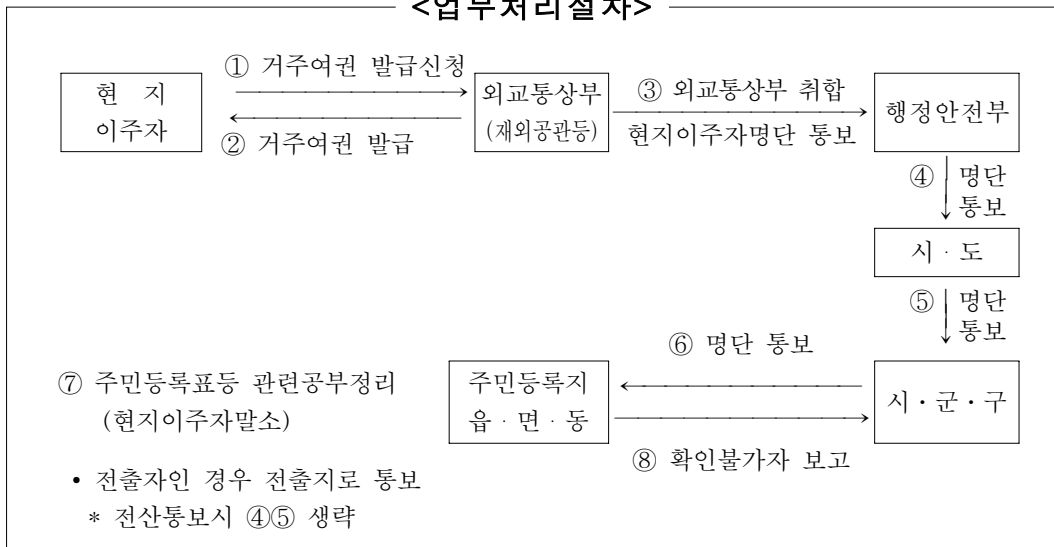
가. 당해 이주자의 주민등록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 정리는 이민출국자 정리와 동일하게 정리하되 “이민출국” 대신 “현지이주”로 정리함.
- 주민등록이 이미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주소이동사항 주소란의 직권말소 정리사항 다음에 현지이주 통보사항을 주서로 기재 정리함.

나. 현지이주자가 타지역으로 전입하였을 경우

- 현지이주자의 전입지 읍·면·동으로 통보하고,
- 통보를 받은 전입지 읍·면·동에서는 “가”의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함.

### <업무처리절차>



### 3. 현지이주예외자

#### 가. 현지이주예외자 제도

- 현지이주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해외이주의 예외자로 인정한 자로서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단서규정)

#### 나. 대상자(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5)

- 1945. 8. 15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하고,
  -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 외교통상부장관으로 부터 인정을 받은 자

#### 다. 업무처리요령

- 이미 현지이주자로 말소된 경우에는 재등록신고절차에 따라 처리함.
-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절차에 따름.

### 4. 재외동포(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등)의 국내거소신고

#### 가. 국내거소신고제도의 의의

-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대한민국내에서의 법적지위보장, 체류기간동안의 각종 편의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한 제도임.

※ 주민등록이 인정되지 않는 재외동포에 대해 주민등록에 갈음하는 제도임

나. 신고기관 : 거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

다. 신고대상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 중국 및 러시아 동포의 대부분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없음.
    - ☞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국적선택절차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이탈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이 가능함.

(다만, 국적상실신고미필자는 이중국적자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처리)

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함.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내지 국내거소이전신고가 외국인등록 내지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재산매입 및 처분을 위한 인간증명 필요시에는 국내거소신고지에서 신고된 인감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 5. 국적취득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 가. 국적취득

출생, 인지, 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 등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임

### 나. 신고절차

- 1) (재)등록신고서(영 제10호 또는 제15호서식)
- 2) 국적취득 등의 사유가 기재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취득 등의 사유 미기재시에는 법무부장관의 “국적취득등의 허가 통지서”첨부
  - ※ '98. 6. 14일 이후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자의 경우 간이 귀화 절차
    - 2년이상 배우자와 거주하거나, 혼인신고후 3년경과 1년이상 배우자와 거주한 경우
- 3)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 외국국적포기각서 (법무부장관 발행)

### 다. 주민등록표 정리

- 신규등록의 방법에 따라 처리함

#### <이중국적자 처리>

이중국적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나 출입국관리소에 국민처우신청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 모든 의무가 면제되므로 **30일 이상 거주하는 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음**

※ 국외 출국시에는 반드시 한국여권으로 사용하여야 함을 안내

## V.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 1. 개요

#### 가. 주민등록증의 지위

-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한 자 중 가족관계등록사항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주민이 합법적인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증명서임
- 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함

#### 나. 발급대상자

##### 1) 신규발급(법 제24조 및 영 제35조)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사항이 확인된 17세 이상자
    -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로부터 6개월간 발급기간임.
  - 영주귀국한 해외교포와 국외이주자가 국내에서 증 발급한 사실이 없을 때
  - 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국적을 회복(취득)하고 신규등록한 때
- ※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7세 미만자 / 가족관계등록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외국인
  -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 귀국한 자(국외에 영주권을 가진 해외교포)

2) 재발급(영 제40조 및 제40조의2)

-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 나) 성명·생년월일·성별 등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다)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 라) 국외이주자(해외교포)가 영주귀국한 경우
- 마)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바) 신규·재발급하고 미수령으로 3년이상 경과하여 회수·과기한 후 재발급 신청한 경우

다. 발급권자(법 제2조)

- 1)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의로 발급함.
- 2) 업무처리의 구분

읍·면·동	시·군·구
1)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및 공고 2) 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본인여부 확인, 지문 채취) 3) 개인별 주민등록표 정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정리 5) 주민등록증 발급 요청 6) 주민등록증 인수 및 교부 7)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수합 파출소 인계 8) 회수 및 서손 주민등록증의 수합 시·군·구 인계	1)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부터 주민등록증 수령 2) 수령한 주민등록증을 읍·면·동에 인계 3) 회수 및 서손 주민등록증 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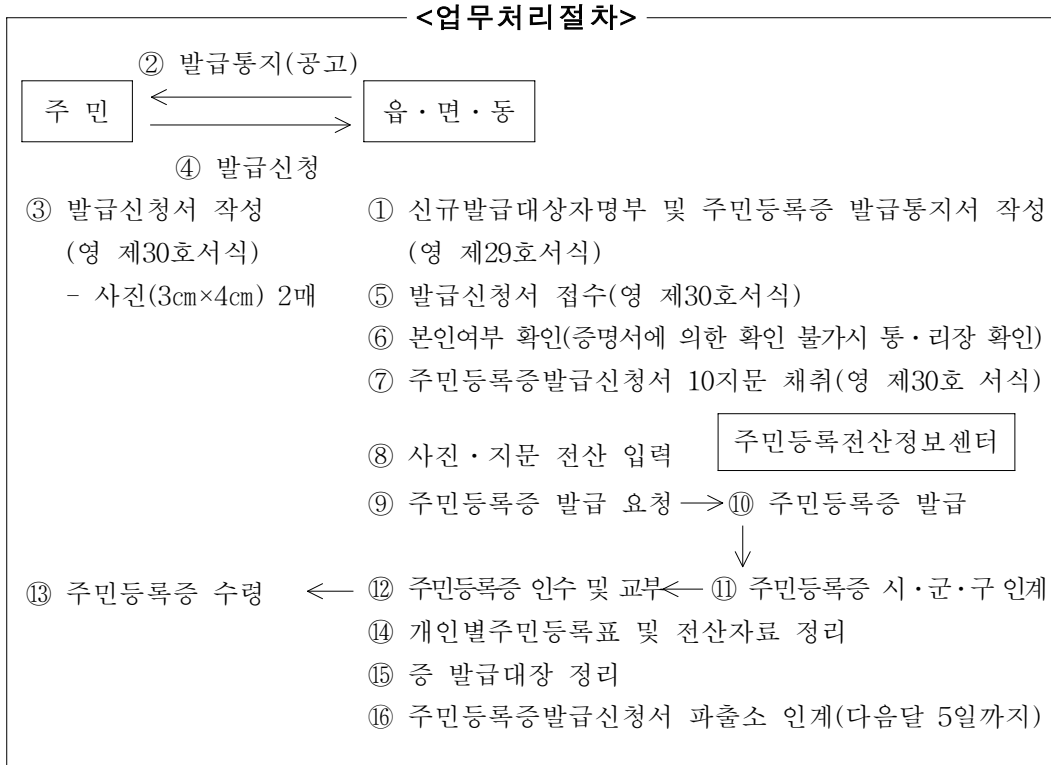
라. 발급시기(영 제35조)

매일 발급(신규발급의 경우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간)

(예) 1982년 6월 21일생의 경우 : '99. 7. 1 ~ '99. 12. 31(6개월간)

## 2. 발급절차

### 가. 신규발급



#### 1) 발급통지(공고)

가) 만 17세가 되는 달에 해당 월의 신규 17세자 명부를 작성하고 발급대상자에게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함. 다만, 발급통지를 한 후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함.

☞ 주) 말소된 자는 재등록 이후 발급통지(공고)함

나) 증 발급통지 또는 공고 사항은 개인별주민등록표의 예비란에 기재함.

## 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및 접수

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영 제30호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나)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진 2매(6월 이내, 가로 3cm×세로4cm, 탈모상반신을 촬영한 사진)를 제출하고 발급신청을 함.

※ 학생증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리장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 <사진 접수시 유의사항>

- 화상자료 입력용 사진의 크기가 맞지 않은 사진(가로3cm, 세로4cm 보다 크거나 사진내 얼굴의 세로길이가 23mm 이상인 경우)
- 모자를 쓰고 찍었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월 이상 경과되어 그동안 본인의 변모,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현상·인화된 사진외 변형 가능한 그 밖의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등

## 3) 본인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은 본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함

### <본인확인시 유의사항>

- 인상이 비슷한 자가 대리로 발급받으려 왔는지
- 형제간 또는 쌍둥이가 바뀌어 발급받으려 왔는지
- 사진이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지는 않은지
- 17세 이상자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증명신청을 하지 않은 자인지
- 주민등록증 발급을 장기간 기피하여 온 자는 아닌지

#### 4) 지문 채취

- 지문채취 담당공무원은 주민이 제출한 1매의 사진을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서(재발급시에는 제외)에 부착하고
- 부착된 사진과 증 발급신청자의 본인여부를 재차 대조·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지문을 채취하고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확인 날인함

#### 5) 사진·지문 전산입력

##### 가) 사진입력

- 사진 접수시 유의사항에 따라 사진입력창에 맞는 사진을 접수, 사진의 얼굴이 중심에 오도록 입력한다.

##### 나) 지문 입력

- 단말기 화면의 지문입력란에 채취한 우무인을 영역에 맞게 입력한다.
- 우무인이 없는 경우 좌무인 → 검지 → 중지 순으로 채취
- ※ 이상의 화상자료 입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전송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화상자료(사진 및 지문)의 입력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화상자료전산입력지침”을 참고

#### 6) 주민등록증 발급요청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
- 발급요청은 민원인이 증 발급을 신청한 날에 반드시 요청하여야 함.

#### 7) 주민등록증 인수 및 교부

- 시·군·구에서는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한국조폐공사)로부터 주민

등록증을 인수한 즉시 해당 읍·면·동에 인계함.

- 읍·면·동에서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함.(신분확인 가족에게 교부 가능)
- 주민등록증 교부시 주민등록증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음.

## 나. 재발급

### 1) 신고에 의한 재발급

- 주민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
  - 수수료징수 대상
-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국외로 이주한 자가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규·재발급 후 3년 경과되어 미수령하여 회수·파기한후 재발급 신청한 경우

### 2) 직권에 의한 재발급

- 주소외의 증기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주민등록증 훼손(본인의 고의·과실 없이 시간경과 및 기타사유)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등

### 3) 분실신고(철회)서 및 재발급 신청서 접수처리

가) 분실신고 및 신고철회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나) 분실신고서 접수시 본인확인 및 분실신고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함.

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의하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증 수령기관을 민원인이 선택

-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함.
- 증발급신청확인서 발급은 별도 발급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고, 확인서는 「사진을 포함 인적사항」난을 투명스티커를 붙여 발급
  - 증발급신청확인서를 전산으로 출력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진 1매를 제출받지 않도록 함.
  - 신규발급(재발급 포함) 주민등록증 교부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의 유효기간 30일 전후에 관계없이 반납받지 않아도 되며, 미반납을 이유로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거부하면 안됨.
  - 주민등록 외 기관에서 보관중인 증을 6월이 지나지 않아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기관으로 이송, 보관
  -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회수, 파기
- ※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재발급신청(영 제32호 서식)만 하고 분실신고는 생략함
- ※ 신규 증은 현행대로 거주지에서 발급, 회수처리는 재발급 신청기관 또는 회수증 발견기관에서 회수 처리

라) 재발급신청의 철회는 당일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가능(수수료 반환)함

- ※ 이때의 철회는 증발급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신분확인을 철저히 함.

### 3. 주민등록증 관리

가. 발급된 주민등록증 관리

- 1) 보 관 함 : 철제 2중 금고에 보관

2) 보관장소 : 화재·분실·도난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당직자 등이 순찰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함.

3) 보관책임

- 가) 시·군·구 (정) 주민등록업무 담당과장  
(부) 주민등록업무 담당 및 담당자
- 나) 읍·면·동 (정) 읍·면·동장  
(부)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나. 회수 및 서손 주민등록증 관리

1) 읍·면·동장이 할 일

- 가) 주민등록증 회수 및 서손 즉시 주민등록증회수(인계)대장(영 제36호서  
식)에 등재하고, 증의 네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2중 금고에 보관함.
- 나) 매월 말에 결산하여 익월 5일까지 회수(인계)대장 사본 1부와 서손 증  
및 회수증을 시·군·구에 인계함.

※ 주민등록증 회수(인계)대장은 5년간 보존

2)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일

- 가) 읍·면·동장으로부터 인수한 회수 및 서손 주민등록증을 인계대장과  
일일이 대조 확인하고 인수자란에 성명을 명기하여야 함.
- 나) 수거된 증은 시·군·구에서 분기별로 16등분이상 잘게 분쇄 파기함.
- 다) 파기증은 폐기물 또는 재활용전문처리업체에서 수거토록 함
- 라) 폐기시에는 폐기확인서를 작성 5년간 보관

※ 유의사항

- 국외이주신고자로부터 반납받은 주민등록증은 이민출국자 명단 통보서를  
접수한 후에 회수 처리하여 파기(거주여권 유효기간 : 10년)

#### 다. 습득주민등록증 처리요령

##### 1) 우체국

가) 매일 주민등록증을 수거하고 최종 주소지(증 뒷면)를 확인하여 다음날 까지 송부함.

나) 요금은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함.

##### 2) 읍·면·동

가) 시·군·구로부터 이송되어온 주민등록증을 습득주민등록증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분실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이미 분실 재발급을 한 때에는 주민등록증회수(인계)대장에 등재하여 매월 시·군·구에 인계함

나) 재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습득주민등록증수령통지서를 본인에게 통보함.

## 4. 주민등록증 뒷면 기재

### 가. 주소변동사항 기재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동사항 기재란은 고무인 또는 특수펜을 사용하여 수기로 기재함.
- 새 주소의 법정주소명칭 등은 고무인을 활용하여 기재(날인)하고, 지번·호수 및 공동주택 동·호수 및 발급일자 등은 속건성 펜(유성으로 마찰, 물 등에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기재함.

### 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내용 기재

-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증 뒷면 주소변경사항란에 정정일자와 구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

- 주소변경사항란에는 구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 일자 및 확인인 난에는 정정일자와 읍·면·동명을 날인(기재)한 후 담당자가 날인함.

<예시>

주소변경	일자 확인인
오류주민등록번호 정정 (구번호 000000 - 0000000)	'94. 7. 20 화곡2동 담당자 날인

## 5.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가.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에 의한 진위확인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82”번
- 입력내용 :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나. 인터넷을 통한 진위확인

- 인터넷 주소 : <http://www.egov.go.kr>
- 입력내용 : “주민등록증진위확인”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다. 육안식별을 통한 진위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주위의 고친 흔적 및 홀로그램 선명도
- 바탕무늬의 선명도
- '02. 2. 23이후 발급된 증은 크기가 신용카드보다 작음

## Ⅵ. 열람 및 등·초본 교부

### 1. 열람 및 등·초본 발급대상

- 주민등록표발급대상은 등록기준지 확인이 된 주민등록자에 한하여 발급 교부함.
- 등본세대 내에 등재된 자라도 등록기준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등본 발급시 제외하고 발급 교부함.

### 2.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절차

#### 가. 구술·서면신청 및 교부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시에는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전국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함.
- 구술신청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열람대장”(규칙 제13호서식) 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대장”(규칙 제14호서식)에 기재한 후 신청내용에 따라 등·초본을 발급 교부함.
- 서면신청서 접수(규칙 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서식)시에도 구술신청의 경우와 같이 처리함.

#### 나.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신청 및 발급

- 신청자가 주민등록증을 넣으면 주민등록증의 지문·주민등록번호·발급 일자를 확인한 후
- 주민등록증발급시 입력한 엄지손가락 등의 생체지문을 확인한 후 발급

## 다. 인터넷 신청 및 발급

- 본인이 “공인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 ※ 공인전자서명 인증서 발급기관 : 금융기관, 우체국, 증권사,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egov.go.kr>)에 접속 우측의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서식 입력, 공인전자서명인증서 확인,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신청
- 전자정부 홈페이지 우측의 “민원신청결과” 메뉴 선택 후 출력
  - ※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대상 민원 : 주민등록 등·초본,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건축물대장등본

### <인터넷발급 등·초본 위·변조 확인방법>

- ① 인터넷 발급 등·초본의 진위확인
  - 발급일로부터 90일 간 확인방법(on-line 확인방법)
    - 주민등록등·초본 서식 좌 상단의 문서확인번호로 G4C 전자민원창구(<http://www.egov.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내용 진위 여부 확인
  - 발급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확인방법(off-line 확인방법)
    - 등·초본을 G4C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캐너로 서식의 하단에 있는 긴 막대띠(2차원바코드)를 읽어 들여 발급내용 확인
- ② 복사방지 기능
  - 등·초본 원본의 상·하단에 “원본”문자와 바탕문양(정부마크)이 표시되어 있으며, 복사시에는“원”또는 “본”문자와 바탕문양이 없어짐.
  - 등·초본원본의 바탕문양은
    - 진하게 복사시 바탕문양이 일부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원” 또는 “본”문자가 없어짐에 따라 복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 유의

### 3.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인과 제출서류 등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신분확인방법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신분증명서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자 신분증(필요시)	신분증명서
3. 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 기관장 명의의 문서	-	전자문서·FAX·우편신청시 불요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공무원증(사본첨부)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용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6.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7. 법 제29조제2항제5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신분증명서
8. 법 제29조제2항제6호(영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별지 제7호서식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별지 제7호서식	○	”
	다. 영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 자	별지 제7호서식	○	”
		별지 제10호서식	발급대장 사본(필요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라. 영 별표 2 제4호에 규정된 자	별지 제7호서식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별지 제11호서식	-	”
9. 법 제29조제2항제7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

-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관사진 등 주민등록자료와 대조
-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학생증, 국가·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임
- ※ 기타 예외로 인정할 경우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발급신청시
    - 의료보험카드 등 관계공부, 통·리장 및 관계공무원의 확인에 의해 발급함
  - 검사, 국회의원 등 독립제기관에서 발급신청시
    - 공무상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청함(법 제29조제2항)
    -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음.

<공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범위>

- ‘공무상 필요한 경우’(법제29조제2항제1호)는
  - 원칙 : 기관장 명의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함(화상자료 열람 포함)
  - 예외 : 관계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신청서, 공무상 필요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분서 등(별지 제7호서식)
    - 특정 공무원이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문서를 작성하여 요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예) : ① 경찰관이 긴급하게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
- ②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관할 검사장의 지명서를 소지한 세무공무원이 공무집행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때
- ③ 관할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한 지명서를 소지한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때
- ④ 당해 기관장(부대장)이 특수업무 수행자임을 증명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대공수사요원 또는 군수사기관요원이 직무집행상 긴급하게 필요한 때

## 가. 전입세대 열람

### 1) 열람신청자

-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광고문 사본  
이나 대법원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 등과 신분  
증명서
- 신용정보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감정평가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감정평가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금융기관 :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서류(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또는 그 세대원 :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집행관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 2) 열람사항

- 해당물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성명(말소된 자 포함)과 전  
입일자, 또 각 세대의 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 그리고 세대원(동거인  
포함)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세대원  
(동거인 포함)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토록 한다.(열람대상 물건지의  
세대원 관계를 문의할 경우 구두로 알려 주도록 함)
  - 수수료 : 물건지 건당 250원
- <집행관이 전입세대 열람후 등·초본 제출을 신청할 경우>
- 신청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사용
  - 서식의 ‘기관명’은 집행관사무소명을, ‘대표자’란은 집행관의 성명을  
기재하되 집행관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집행관이 방문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무원이 방문할 경우 ‘방문자’란에 인적사항을 기재
  - 집행관 또는 사무원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제시
  - 집행관이 작성한 문서로 별지 제7호서식과 입증자료 대체 불가
  - 입증자료 :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이 기재된 현황조사명령서
- 열람내용은 출력(프린트)해줄 수 있으나 증명(날인 등)해 줄 수 없음.

#### 4. 주민등록말소자 등·초본 발급

##### <발급대상>

- 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말소된 주민등록 말소자
  -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사망자의 제적부상 가족이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도 가능
  - 별지 제9호서식(위임장)의 여백에 사망자의 인적사항 기재
- 나. 국외이주 말소자
- 다. 구 주민등록표상 거주사항이 재작성시 누락된 자
- 라. 직권(신고)말소자
  - 단, 말소자 본인·말소자의 위임을 받은 자·제3자에게 위임을 받은 말소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재등록신고 후 발급가능

#### 5. 등·초본 발급시 유의사항

- 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등·초본발급을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29조제5항)

나.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등·초본을 발급(또는 열람)할 수 있음.(규칙 제13조제5항)

※ 등·초본 서식내용 중 세대구성사유, 변동일·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역 등이 나타나는 것을 신청인이 원치 않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Ⅶ. 수수료 및 사용료

### 1. 수수료

가. 수수료 종류 및 금액(규칙 제17조)

구 분	수 수 료
열 램	1건 1회 250원
등·초본교부	1통 350원
열람·교부(전자민원 G4C)	무 료
증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5,000원

나. 징수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함.
-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 다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자가 신청 당일 근무시간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함

다. 수수료의 면제(규칙 제1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신청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련근거법령에 의하여 해당자가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관계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이 신청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이 신청하는 경우

## 2. 사용료(규칙 제19조)

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 1건당 40원
-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 1건당 30원

나. 사용료의 귀속(법 제4조, 규칙 제 19조2)

- 징수한 사용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군·구에 배분하고, 당해 시·군·구의 수입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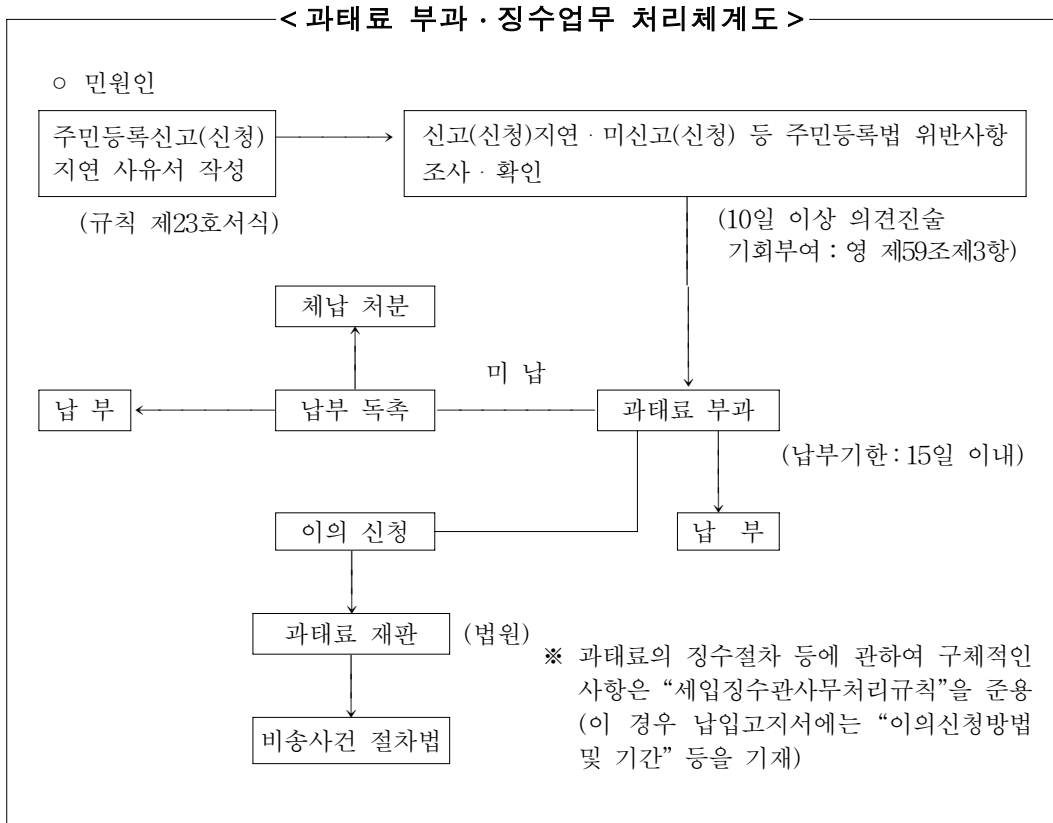
다. 사용료의 면제(규칙 제19조1)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정부투자기관 등 제외)와
- 관계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고유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법, 관계법령 등에서 주민등록사항의 통보를 하도록 규정된 경우 예시
- 경찰청 : 주민등록변동사항 통보
  - 병무청 : 신상이동보고서, 제1국민역대상자명부 등
  - 관할세무서장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망 신고자(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80조, 영 제82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인명부 작성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가입자 변동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가입자 변동자료

## Ⅷ. 과태료 · 벌칙

### 1. 과태료(법 제40조, 영 제59조, 규칙 제20조, 제21조)



#### 가. 목 적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자 중 형사벌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소정의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 나. 과태료의 부과원칙

- 1) 과태료의 금액은 신고(신청)지연기간에 따라 부과함.
- 2)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신청)의무자에게 부과함.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지연의 경우와 세대주의 신고로 말소되었던 자의 재등록시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부과

※ 14세 이상부터 부과 가능(형사미성년 적용), 과태료부과나 체납시 체납처분은 본인에게만 가능

- 3) 세대원중 신고지연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그 중에서 높은 것을 적용함.
- 4) 과태료 부과대상 실기사건이 연속 발생된 경우에는 행위별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함.
- 5) 과태료부과는 주민등록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부과함
- 6)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과 이의신청방법·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입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다.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금액

### 1) 과태료 부과대상

부 과 대 상 자	부과근거	금 액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0조①	50만원 이하
최고 또는 공고된 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②	10만원 이하
신고(신청)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③	5만원 이하

2) 과태료 부과금액(규칙 제21조)

가) 최고 또는 공고된 자

-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3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5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7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10만원

나)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5천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만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008. 6. 13)에 의해 자진납부시 100분의 20을 추가로 경감 가능

## 2. 벌 칙(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 가. 고발조치

#### ○ 고발대상자

대 상 자	근거규정	벌칙내용
○ 주민등록신고를 2중으로 한 자,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법 제10조②, 법 제37조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법 제37조②	
○ 전산자료를 보유 또는 이용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화일을 이용한 전산처리를 한 자와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법 제31조 ②, ③ 법 제37조②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법 제7조④ 법 제37조②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법 제37조②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받은 자	법 제29조②~ ④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가 본래의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활용한 경우	법 제30조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할 수 없음)	법 제37조②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	법 제37조②	

○ 고발조치

읍·면·동장은 고발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장(편람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즉시 수사기관(관할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고발조치 하여야 함.

※ 고발대상자라도 고발조치와는 무관하게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신청은 접수처리 하여야 함.

나.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 및 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37조의 벌금형을 과함.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 받은 때
-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활용한 때
- 3)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

## Ⅸ. 기 타

### 1. 주민등록의 기간계산

가. 기간의 기산점 :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나. 기간의 만료점 :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함

\* 기간말일(예 : 9월 7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예 : 9월 8일)의 종료로 만료함.

※ 참 고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日), 주(週), 월(月) 또는 년(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2. 주민등록사무 필요경비(법 제4조, 제5조)

가. 수입금 귀속

-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는 시·도 및 시·군·구의 수입

나. 필요경비부담

- 주민등록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시·군·구의 부담이 원칙

※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 소요경비는 국가가 일부 부담

-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상 잘못으로 재발급,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영 제60조)

#### 가. 서류 보존기간

보존기간	대 상 서 류 명
영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세대별, 개인별)</li> <li>- 말소된 세대별·개인별주민등록표</li> <li>-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및 주민등록증번호조립부</li> <li>-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li> </ul>
10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li> </ul>
5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기준지통보관계서류 - 과태료부과·징수관계서류</li> <li>- 주민등록증의 습득·회수 및 파기대장</li> <li>- 주민신고관계서류 -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상황보고</li> <li>-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관계서류</li> <li>- 주민등록번호조정관계서류 -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결산 관계서류</li> <li>-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명부</li> <li>-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외의 주민등록증발급 관계서류</li> <li>- 주민등록표이송 관계서류</li> </ul>
3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의신청 관계서류</li> <li>-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대장</li> <li>- 주민신고관계서류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서류</li> <li>- 국외이주(현지이주)통보 관계서류</li> <li>- 전산자료 이용 승인대장</li> <li>- 다른 읍·면·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li> <li>-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li> </ul>
1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관계서류</li> </ul>

#### 나. 보존기간의 기산점

○ 당해년도에 처리한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익년도 1월1일부터 기산함.

예) 2004년도 주민신고 관계서류는 그 익년인 2005. 1. 1부터 5년 간을 보존하는 것이므로 2009. 12. 31까지 보존하고 2010년에 폐기하는 것임.

##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가. 제도 개요

○ 의 의 : 그 작성된 일자에 증서의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함

○ 읍·면·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근거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상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 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 중 「공무소」에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도 해당이 된다는 대법원 유권해석에 기인함(사법정책 1401-132. 97. 6. 11)

### 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1) 확정일자 부여 청구

##### 가) 청구자

○ 97. 9. 1일 이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자로서 전입된 주소지의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

※ 97. 9. 1 이전 전입자에게는 미부여 : 대법원 사법정책 1401-225(97. 10. 29)

※ 전입시 확정일자를 받은 자가 추후 재계약하는 경우 당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재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금액변경 또는 기간연장)에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관-222,06.2.2)

##### 나) 청구기관

○ 주민등록 전입신고처리가 된 주소지 관할 읍·면·동·출장소

※ 등기소 등에서도 종전과 같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음

다) 청구 방법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정일자부여를 구두청구
- ※ 확정일자부여 청구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임차인 혼자서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임차인이 아니어도 가능함

2) 확정일자 부여

가) 확인할 사항

- 청구자가 당해기관에 적법하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부동산중개소 또는 개인이 작성한 정당한 임대차계약서인지
  - 임대·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완성된 계약서의 원본인지
-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전입지가 동일한지 여부
- ※ 기타 확인사항에 의문이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로 문의

나) 확정일자의 부여

- 확정일자부 기록 및 날인
  - 청구인의 주소, 성명, 문서명목, 부여번호, 일자인 날인, 간인 날인 등
- 계약서 뒷면에 확정일자 부여
  - 전입신고필 확인, 접수일련번호 부여, 기관장 직인 날인, 수입증지 부착, 소인 등
- ※ 직인은 민원실용 직인으로 사용, 계약서가 2매 이상일 경우 직인으로 간인

다. 확정일자 부여시 법적효과

-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획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5. 주민등록법 연혁

일 자	공 포 번 호	연 혁
1962. 5. 10 (1962.6.25시행)	법률제106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류법에 대체하여 주민등록법 제정</li> <li>○ 시·도민증 제도</li> <li>○ 이중등록 배제</li> <li>○ 업무관장 : 시·읍면장 (감독권 : 내무부장관·시장·군수)</li> </ul>
1968. 5. 29 (1차 개정) (1968.8.29시행)	법률제20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개개인에 주민등록번호 부여(12자리)</li> <li>○ 30일 이상 거주자 시·읍·면에 등록</li> <li>○ 관외거주자는 그가 속하는 거주지에 등록</li> <li>○ 병역사항과 특수기술사항을 거주지에 등록</li> <li>○ 호적신고로 주민등록신고를 갈음</li> <li>○ 직권등록, 이의신청, 재심청구제도 마련</li> <li>○ 본적지에 주거표 작성비치</li> <li>○ 주민등록에 관한 본적지 통보제 마련</li> <li>○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함</li> <li>○ 18세이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시·도민증 폐지)</li> </ul>
1970. 1. 1 (2차 개정) (1970.2.1시행)	법률제215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li> <li>○ 필요시 경찰관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li> </ul>

일 자	공 포 번 호	연 혁
1975. 7. 25 (3차 개정) (1975.8.25시행)	법률제277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발급대상자를 18세에서 17세로 인하확대하고 발급받을 의무부여(민방위편성 및 전시인력동원대상자의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함)</li> <li>○ 주민등록증경신(1차)</li> <li>○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현행13자리)</li> <li>○ 신고 불이행등에 대한 벌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한내 미신고자 500원→10,000원</li> <li>└ 최고·공고후 미신고자 1,000원→20,000원</li> </ul> </li> <li>○ 시장 군수가 직접 과태료 부과(종전에는 법원의 결정을 얻은 후에 부과)</li> <li>○ 주민등록증을 채무 담보 등으로 제공 금지</li> <li>○ 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규정 마련</li> </ul>
1977. 12. 31 (4차 개정) (1978.9.1시행)	법률제304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 주민등록표 작성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 예비군, 민방위등 개인신상사항 통합기록</li> </ul> </li> <li>○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신고는 공법상의 신고로 인정(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인감증명법등)</li> <li>○ 1년이상 발급 미신고자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게함</li> </ul>
1980. 12. 31 (5차 개정) (1981.1.1시행)	법률제333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귀 및 신거주지변경신고 기한도 14일 이내에 하도록 의무화</li> <li>○ 신거주지 변경의 처리기한 단축을 위하여 최후로 변경된 신거주지 읍면장에게 이송토록 함</li> <li>○ 주소의 중복,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퇴거신고일 익일로부터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li> <li>○ 주민등록증 소지의무 신설 및 증분실시 7일 이내에 분실신고</li> <li>○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대상 확대(행정기관→ 공공단체, 일반기업체포함)</li> <li>○ 벌칙적용대상 확대(60일 이내에 증발급미신고자, 80일 이내에 증재발급 미신청자)</li> <li>○ 신고 불이행등에 대한 벌칙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한 내 미신고자 1만원 → 2만원</li> <li>└ 최고공고 후 미신고자 2만원 → 4만원</li> </ul> </li> </ul>

일 자	공 포 번 호	연 혁
1988. 12. 31 (6차 개정) (1989.1.1시행)	법률제4041호	○ 경범죄처벌법중 주민등록증소지 관련조문 삭제
1991. 1. 14 (7차 개정) (1991.3.1시행)	법률제4314호	○ 전산조직에 의한 사무처리근거 마련 ○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 원칙 : 본인, 세대원 또는 이들의 위임을 받은 자 - 예외 : 정당한 이해관계자, 공무상 필요한 경우등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용시 사전승인제도 규정 ○ 신거주지변경 신고제도 개편 - 주민편의를 위해 최종전입주소지에 신고
1993. 12. 27 (8차 개정) (1994.7.1시행)	법률제4608호	○ 거주지이동시 전출신고를 폐지하고, 전입신고만 하도록 함(전출신고, 복귀신고, 신거주지변경신고 폐지) ○ 전입신고일로부터 신거주지에 등록된 것으로 인정 ○ 일시로 해외출국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국내 보관제 폐지
1997. 12. 17 (9차 개정) (1998.12.1시행)	법률제5459호	○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경신발급 및 주민카드 발급센터 설치 ○ 주민카드 상시소지 의무 삭제 ○ 분실신고기간 및 신고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 ○ 주민등록신고(신청)의무위반 과태료 현실화 및 벌칙 강화
1999. 5. 24 (10차 개정) (1999.7.1시행)	법률제5987호	○ 주민등록 신고 사항 중 병역의무자의 병역신고 항목삭제 ○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수록 근거 마련 ○ 경신 발급되는 새 주민등록증의 명칭을 ‘주민카드’에서 ‘주민등록증’으로 환원하고 ○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의 설치근거마련

일 자	공 포 번 호	연 혁
1999. 9. 7 (11차 개정) (2000.10.1시행)	법률제602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용어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함</li> </ul> </li> </ul>
2001.1.26 (12차 개정) (2001.4.27시행)	법률제638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의 부여근거를 법으로 규정함</li> <li>○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li> <li>○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li> <li>○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영리를 위하여 행사하거나 제공한 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 받은 자, 수집한 주민등록자료를 그 보유·관리목적 외의 이용 또는 활용한 자 등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허위·부정한 열람 등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둠</li> </ul>
2004.3.22 (13차 개정) (2004.3.22시행)	법률제720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전입신고에 갈음신고되는 법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명칭을 한글로 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삭제</li> <li>-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함</li> </ul> </li> <li>○ “주민등록증발급센터”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함.</li> <li>○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함.</li> <li>○ 읍·면·동·출장소장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권을 시·군·구로 위임하던 것을 법에서 직접 부여함.</li> <li>○ 주민등록 관련 신고·신청의 전자문서 처리 근거 마련</li> <li>○ 공직선거사 인터넷상 의견제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 근거 마련</li> <li>○ 전산조직에 의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근거마련</li> <li>○ 주민등록담당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근거마련</li> </ul>

일 자	공 포 번 호	연 혁
2006. 3.24 (14차 개정) (2006.9.25시행)	법률제790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른 정비</li> <li>○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의 위임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입신고 등 각종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세대주의 위임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할 수 있도록 함</li> </ul> </li> <li>○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상 규정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에서 신청대상에 대해, 영과 규칙에서 신청서, 입증서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li> </ul> </li> <li>○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자 및 제공범위 명확화와 제공절차 규정</li> <li>○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의 확대</li> </ul>
2007. 5.11 (15차 개정)	법률제842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개정 (※ 제도변경 없음)</li> </ul>
2007. 5.17 (16차 개정)	법률제843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개정(※ 제도변경 없음)</li> </ul>